

별첨	사 업 비 집 행 기 준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I	사업비 편성 체계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비목	성격	주요 세목	한도 및 관리기준
콘텐츠 제작비	• 관광콘텐츠 프로젝트의 핵심 산출물을 기획·개발·제작하는 비용	• 콘텐츠 기획·제작 용역비 • 디지털·권리 사용료 • 콘텐츠 제작 재료비	별도 정률 한도 없음 ※ 단일 계약 또는 거래처 집행 금액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진흥원 사전승인 대상
프로젝트 운영비	• 콘텐츠를 관광지 또는 현장에 적용·운영하기 위한 직접 비용	• 행사·프로그램 운영비 • 외부전문 활동비	
홍보비	• 관광객 유입, 프로젝트 홍보, 성과확산을 위한 비용	• 광고·홍보비 • 홍보 콘텐츠 제작비	총사업비의 40% 이내
사업 수행경비	• 프로젝트 수행을 뒷받침하는 출장, 부대 경비	• 국내여비 • 사업수행 부대경비	총사업비의 10% 이내

비목 편성 기본 원칙	
사업비 성격	• 프로젝트 직접 수행비에 한함 * 인건비(급여, 수당, 상여금, 퇴직금, 4대보험 등) 편성 불가 • 총사업비(지원금+자부담금) 전체에 동일 기준 적용 * 편성 한도 등 비율 기준 동일
편성 기준	• 콘텐츠 제작비, 프로젝트 운영비, 홍보비, 사업수행경비 총 4개 비목으로 편성하며, 동일 비목 내 세부 항목 조정은 자율, 비목 간 전용은 진흥원 사전승인 필요 • 비목에 관계없이 외부 용역성 경비(기획·제작·운영대행·광고대행·조사·분석 등) 합산은 총사업비의 80% 이내 편성을 원칙으로 함
집행 원칙	• 사업비는 세목 명칭이 아닌 실제 집행 내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, 자산취득성 경비, 사무실 임차료·공과금 등 기업 일반 운영경비는 비목과 관계없이 편성 불가 • 사업비 집행기간: 협약체결일 ~ 2026.11.30. * 기간 외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• 모든 집행은 사업비 전용 카드(체크카드) 또는 전용통장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며, 현금·간이영수증, 해외결제 집행은 불인정 •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 상호거래 불가
사업비 변경	• 동일 비목 내 세부항목 조정은 사전승인 없이 가능(정산 시 변경내역 제출) - 단, 주요 산출물, 운영방식, 계약상대방 변경은 사전승인 대상 • 비목 간 예산전용은 전용금액 합계가 총사업비의 10% 이상인 경우 집행 전 변경 승인 필요 (10% 미만인 경우 변경 사용 후 정산 시 변경내역 제출) • 주요 과업 및 산출물 변경은 금액과 관계없이 집행 전 변경 승인 필요

II

비목별 집행 및 불인정 기준

구 분	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	불인정 기준
비목	세목		
일반 운영비 (201)	기획· 제작비	- 관광콘텐츠 기획·개발·제작을 외부에 의뢰하는 비용 ※ 조사, 스토리, 시나리오, 영상, 디자인, 사진, XR·AR·VR, 웹페이지, 성과분석 등	- 사업수행과 무관한 일반 경영컨설팅 - 기업 내부 업무를 외부용역으로 형식화한 경우 - 결과물이 없거나 활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
	사용료	- 콘텐츠 제작·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 및 권리 사용료 ※ SW, 클라우드, 호스팅, 스트리밍, 예약 시스템, 음원, 폰트, 이미지, IP, 지식 재산권 출원 등	- 기업 일반업무용 SW, 영구 라이선스 구매 - 사업기간을 초과하는 사용분 -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저작물 사용료 - 기존 IP 유지비, 연차료 등
	재료비	- 콘텐츠 제작에 직접 쓰이는 소모성 재료 구입비 ※ 체험키트, 시제품, 목업, 전시물, 촬영·제작 부자재 등	-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- 범용 장비, 재고성 물품, 사용처가 불명확한 물품
프로젝트 운영비	행사 운영비	- 행사·프로그램 운영 일체 경비 1) 공연·전시·체험·팝업·시연회 운영 2) 현장용 초청장·현수막·안내물 제작 3) 공간·장비·물품 임차 4) 운영용역, 설치·철거·운송 5) 현장 소모품, 보험·안전·인허가	- 내부 직원 인건비 또는 운영수당, 식사·다과비 - 사업계획에 없는 행사를 임의 개최한 비용 - 상시 또는 사업기간 외 임차료 - 영구 시설물 설치, 시설개선 등 자본적 지출 - 기업 일반 보험료, 과태료, 벌금, 법령 위반 비용
	외부 전문 활동비	- 외부 전문가의 자문, 컨설팅 등 일회성 전문활동 대가 ※ 1일 1시간 80,000원(최대 5시간) 기준	- 내부 회의 참석수당 - 기업 대표자·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- 상시근로성 인건비로 볼 수 있는 경우 - 지침 내 기준을 초과 집행한 경우
홍보비	광고· 홍보비	- 온·오프라인 광고 및 협업 홍보비 (홍보영상 송출비, 광고대행 용역비) ※ TV, 신문, 잡지, 옥외광고, 포털, SNS, 유튜브 등	- 프로젝트와 무관한 기업 일반 브랜드 광고 - 실제 광고 집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비용 - 사업기간 외 송출·게시된 광고비
	홍보물 제작비	- 홍보·안내용 제작물 및 홍보콘텐츠 제작비 ※ 리플릿, 포스터, 배너, 현수막, 카드뉴스, 프로그램북, 슷폼, 홍보영상 등	- 기업 일반 회사소개서, 명함 등 일반 홍보물 -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는 제작비 - 기념품, 경품, 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

구 분		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	불인정 기준														
비목	세목																
사업 수행 경비	국내 여비	-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비 1) 항공료, 선박료 등 교통비 실비 2) 숙박비 실비 3) 출장자의 일비, 식비	- 참여인력표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의 출장경비 - 숙박, 교통비 등 대행수수료 및 취소·변경수수료														
	[주의사항] - 항공, 선박, KTX 등 실물티켓이 발행되는 교통편은 인정되나 택시비, 일반버스는 불인정 - 여비 등 규정은 사업지침을 따라야 하며, 초과지급된 금액은 불인정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철도운임</th><th>선박운임</th><th>항공운임</th><th>숙박비</th><th>일비</th><th>식비</th></tr><tr><td>일반</td><td>실비 (일반실)</td><td>실비 (2등급)</td><td>실비 (일반석)</td><td>실비(1박당 상한액 : 서울 10만원, 광역시 8만원, 그 외 지역 7만원)</td><td>1일당 25,000</td><td>1일당 25,000</td></tr></table>			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숙박비	일비	식비	일반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 (일반석)	실비(1박당 상한액 : 서울 10만원, 광역시 8만원, 그 외 지역 7만원)	1일당 25,000	1일당 25,000
	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숙박비	일비	식비										
일반	실비 (일반실)	실비 (2등급)	실비 (일반석)	실비(1박당 상한액 : 서울 10만원, 광역시 8만원, 그 외 지역 7만원)	1일당 25,000	1일당 25,000											
부대 경비	-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액 직접경비 1) 사업 수행 관련 소모성 물품구입비 2) 임시 회의실 임차료, 온라인 회의 서비스 이용료 3) 자료 출력·제본비 4) 프로젝트 관련 외부 교육·세미나 참가비	- 내부 회의 식비·다과비·회식비 - 공과금, 통신비, 사무실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- 일반 교양교육, 학위과정, 개인 자격증 취득비															

III 불인정 공통사항

구분	공통사항
불인정기준	- 사업 참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건비, 4대보험 기업부담금 - 협약체결일 이전 또는 협약된 지원종료일 이후 집행한 금액 -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-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-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약정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-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-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-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적·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- 대표자와 인척관계(4촌 이내)인 사업장과 거래한 경우 - 용역비, 임차비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※ 사업자등록 보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개인(무등록)에 한함 -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- 부동산임차료, 공과금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 -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(유형업종, 위생업종, 레저업종, 사행업종 등)에 지원금을 지출한 경우